국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박근혜 (인)

2013 년 7 월 30 일

국무총리 정홍원

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

⊙ 법률 제 11962 호
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

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제 3 호 중 "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"를 "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"으로 한다.

제 4 조의 2 제 3 항을 제 5 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 3 항 및 제 4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변리사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 4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(제 4 조제 3 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한다)은 변리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.

④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.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4 조의 4 를 삭제한다.

제 5 조의 2 제 2 항 중 "변리사의 직무"를 "변리사의 업무"로 한다.

제 6 조의 3 의 제목 "(법인의 설립)"을 "(특허법인의 설립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및 같은 조 제 2 항 전단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3 항제 2 호 중 "성명"을 "성명, 주민등록번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 4 호, 같은 조 제 4 항 및 제 5 항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4 의 제목 "(구성원 등)"을 "(특허법인의 구성원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 2 호 중 "및"을 "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2 항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5 의 제목 "(법인의 사무소 등)"을 "(특허법인의 사무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2 항 중 "법인의 구성원"을 "특허법인의 구성원"으로, "법인의 사무소"를 "특허법인의 사무소"로, "다른 법인"을 "다른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6 의 제목 "(업무집행 방법)"을 "(특허법인의 업무집행 방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본문 중 "법인은 법인의"를 "특허법인은 특허법인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 2 항 및 제 3 항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7 의 제목 "(구성원 등의 업무제한)"을 "(특허법인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그 특허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 6 조의 8 의 제목 "(설립인가의 취소)"를 "(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

신설하고, 같은 항 제 3 호 중 "제 6 조의 5 부터 제 6 조의 7 까지"를 "제 6 조의 5, 제 6 조의 6"으로, "제 6 조의 10"을 "제 6 조의 11"로 하며, 같은 조 제 2 항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다만,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 9 의 제목 "(해산)"을 "(특허법인의 해산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 2 항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10 을 제 6 조의 11 로 하고, 제 6 조의 10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 조의 10(특허법인의 조직 변경) ① 특허법인(유한)의 설립요건을 갖춘 특허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 특허법인(유한)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 있다.

② 특허법인이 제 1 항에 따라 특허법인(유한)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 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특허법인의 해산등기 및 특허법인(유한)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 1 항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경우 특허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특허법인(유한)의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.

④ 제 1 항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(유한)의 구성원 중 종전의 특허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제 2 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특허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 년간 특허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.

제 6 조의 11(종전의 제 6 조의 10)의 제목 "(준용규정)"을 "(특허법인의 준용규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1 항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, "제 8 조 및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의 규정을"을 "제 8 조,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 및 제 17 조(제 17 조제 2 항제 4 호는 제외한다)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 2 항 중 "법인"을 "특허법인"으로 한다.

제 6 조의 12 부터 제 6 조의 22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6 조의 12[특허법인(유한)의 설립] ① 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 명 이상의 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허법인(유한)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특허법인(유한)을 설립할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, 명칭,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

2. 구성원과 이사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
3.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및 자본금 총액

4. 구성원의 회의에 관한 사항

5. 특허법인(유한)의 대표에 관한 사항

6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
④ 특허법인(유한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.

⑤ 특허법인(유한)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제 6 조의 13[특허법인(유한)의 구성원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.

1.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

2. 제 17 조 또는「변호사법」제 90 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

3.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② 특허법인(유한)은 소속변리사를 둘 수 있으며,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특허법인(유한)은 3 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.

1. 구성원이 아닌 사람

2. 설립인가가 취소된 특허법인(유한)의 이사이었던 사람(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그 취소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 6 조의 14[특허법인(유한)의 사무소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, 분사무소에는 1 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여야 한다.

② 특허법인(유한)의 구성원과 소속변리사는 소속 특허법인(유한)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두거나 다른 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가 될 수 없다.

제 6 조의 15[특허법인(유한)의 업무집행 방법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특허법인(유한)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변리사를 지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사가 아닌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를 업무담당 변리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, 이사가 아닌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각자가 그 특허법인(유한)을 대표한다.

③ 특허법인(유한)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특허법인(유한)의 명의를 표시하고,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 16[특허법인(유한)의 자본금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의 자본금은 3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출자 1 좌(座)의 금액은 1 만원으로 한다.

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1 천좌 이상이어야 한다.

④ 특허법인(유한)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3 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증자(增資)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(補塡)하여야 한다.

⑤ 제 4 항에 따라 증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(計上)한다.

⑥ 특허청장은 특허법인(유한)이 제 4 항에 따라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.

제 6 조의 17[특허법인(유한)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자기자본에 100 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제 1 항에서 "자기자본"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(제 6 조의 18 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)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새로 설립된 특허법인(유한)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.

제 6 조의 18[특허법인(유한)의 손해배상준비금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특허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6 조의 19[특허법인(유한) 설립인가의 취소] ① 특허청장은 특허법인(유한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6 조의 12 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

2. 제 6 조의 12 제 1 항 또는 제 6 조의 13 제 3 항에 따른 구성원 또는 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구성원 또는 이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

3. 이사 중에 제 6 조의 13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. 다만,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제 6 조의 16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

5. 제 6 조의 13 제 2 항, 제 6 조의 14, 제 6 조의 15, 제 6 조의 16 제 6 항, 제 6 조의 17 제 1 항, 제 6 조의 18, 제 11 조 또는 제 6 조의 22 에서 준용하는 제 6 조의 2 제 2 항, 제 7 조, 제 7 조의 2,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② 특허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특허법인(유한)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 20[특허법인(유한)의 해산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

1.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

2.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 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

3. 합병

4. 파산

5. 설립인가의 취소

② 특허법인(유한)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의 21[특허법인(유한)의 회계처리 등] ① 특허법인(유한)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 13 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.

② 특허법인(유한)은 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 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허청장은 필요하면 제 2 항에 따른 재무상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.

제 6 조의 22[특허법인(유한)의 준용규정] ① 특허법인(유한)에 관하여는 제 6 조의 2 제 2 항, 제 6 조의 7, 제 7 조, 제 7 조의 2, 제 8 조, 제 8 조의 2 부터 제 8 조의 4 까지 및 제 17 조(제 17 조제 2 항제 4 호는 제외한다)를 준용한다.

② 특허법인(유한)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「상법」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11 조 중 "제 6 조의 3 제 1 항"을 "제 6 조의 3 제 1 항 또는 제 6 조의 12 제 1 항"으로, "법인"을 "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제 12 조제 1 항 중 "직무"를 "업무"로 한다.

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6 조(변리사자격·징계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·징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

2.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

3.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

4.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9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특허청 소속 공무원

2. 변리사

3. 대학교수

4.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제 17 조제 2 항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징계: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

2. 제 17 조제 2 항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징계: 위원회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

3. 제 1 호 또는 제 2 호 외의 사항: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
⑤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 17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7 조(징계)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.

② 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견책

2.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

3. 2 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

4. 등록취소

③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 1 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 1 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.

제 1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17 조의 2(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) 「변호사법」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같은 법 제 90 조제 3 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 102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.

제 18 조제 1 항 중 "변리사징계위원회"를 각각 "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 2 항 중 "지났을 때에는"을 "지나면"으로 한다.

제 20 조를 삭제한다.

제 22 조의 제목 "(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등의 명칭 사용금지)"를 "(유사명칭 사용금지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 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이 아닌 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(유한)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 23 조 중 "고안자"를 "고안자, 창작자"로, "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"를 "특허출원인 또는 실용신안·디자인등록출원인"으로, "고안의"를 "고안 또는 창작의"로 한다.

제 24 조제 1 항 중 "제 6 조의 10"을 "제 6 조의 11 또는 제 6 조의 22"로 한다.

제 26 조 본문 및 단서 중 "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제 2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 28 조(업무의 위탁)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리사회 또는 시험운영 관련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4 조제 3 호, 제 4 조의 2, 제 6 조의 3, 제 6 조의 4, 제 6 조의 6 부터 제 6 조의 9 까지, 제 6 조의 11, 제 12 조, 제 17 조의 2, 제 23 조 및 제 28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부칙 제 10 조제 5 항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정관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 6 조의 3 제 3 항제 2 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법인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 3 조(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 6 조의 7 제 2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특허법인이 수임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제 4 조(특허법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 6 조의 8 제 1 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 5 조(특허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준용에 관한 적용례) 제 6 조의 11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 6 조(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) 제 17 조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제 7 조(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) 제 17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「변호사법」 제 90 조제 3 호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같은 법 제 102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제 8 조(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 4 조제 3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 10429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 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제 9 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심의, 의결, 그 밖의 행위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및 변리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, 그 밖의 행위는 제 16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 10 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2 조제 1 항제 2 호, 제 90 조제 1 항제 2 호, 제 92 조의 3 제 1 항제 2 호, 제 140 조제 1 항제 1 호의 2, 제 140 조의 2 제 1 항제 1 호의 2, 제 162 조제 2 항제 2 호의 2 및 제 203 조제 1 항제 2 호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8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2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③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9 조제 1 항제 2 호, 제 25 조제 2 항제 1 호의 2, 제 46 조의 2 제 2 항제 2 호, 제 77 조의 2 제 1 항제 2 호, 제 77 조의 25 제 2 항제 3 호 및 제 79 조제 1 항제 1 호의 2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④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9 조제 1 항제 2 호, 제 29 조의 2 제 2 항제 1 호의 2, 제 29 조의 8 제 1 항제 3 호, 제 72 조의 2 제 1 항제 2 호, 제 72 조의 3 제 1 항제 2 호 및 제 72 조의 26 제 2 항제 3 호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⑤ 법률 제 11848 호 디자인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7 조제 1 항제 2 호, 제 68 조제 2 항제 2 호, 제 74 조제 1 항제 3 호, 제 126 조제 1 항제 2 호, 제 12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150 조제 2 항제 3 호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

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4 조제 3 항 중 "특허법인"을 각각 "특허법인·특허법인(유한)"으로 한다.